제4장

손해배상 지급 사례

제4장 손해배상 지급 사례

사례 33 2019서울조정82 손배청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적인 SNS글을 사용한 기사의 열람 · 검색을 차단하고 손해배상하기로 합의한 사례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A변호사가 해외 순방중인 김정숙 여사의 패션을 비판한 SNS글을 게시하자 네티즌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면서 한 네티즌의 프로필 사진과 성명이 노출된 SNS글을 캡처해 보도했다.

신청취지

신청인은 성명과 프로필 사진에 대한 신원 보호 조치 없이 사적으로 이용하는 SNS에 게시한 글이 무단으로 사용되어 주변 사람들에게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알려지게 되어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며 손해배상 100만 원을 청구했다.

조정결과

조정심리 중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유감을 표명하고 위 보도문의 열람 및 검색을 차단하는 것과 함께 신청취지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수용하겠다고 밝혀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 조정대상보도는 열람 · 검색이 차단되어 수록하지 않음

조정성립 사항

기사 열람 및 검색 차단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더 이상 열람 · 검색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포털사이트에서도 더 이상 열람 · 검색되지 않도록 각 포털사에 요청한다.

손해배상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

사례 34 2019서울조정205 · 206 정정 · 손배청구

신청인들의 동의 없이 촬영 · 공표한 사진기사에 대한 손해배상과 함께 향후 정보통신망에 매개된 사실을 인지하는 대로 열람 · 검색을 차단하도록 중재부가 직권으로 결정한 사례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시민단체 회원들이 국방부 앞에서 진행한 양심적 병역거부 반대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에 관해 보도하면서 국방부 앞을 지나가는 현역 군인인 신청인들의 모습을 노출했다.

신청취지

신청인들은 국방부에 파견된 군 간부들로서, 우연히 기자회견장을 지나친 것일 뿐인데 '군 관계자'라는 표현과 함께 무단으로 촬영된 사진이 모자이크 처리 없이 대형 포털 메인화면에 게시돼 마치 양심적 병역거부를 반대하는 관계자 또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자로 오해받게 됐다며 사진 삭제와 함께 정정보도 및 1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신청인들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사진 속 인물들은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기자회견과 전혀 관련이 없고, 이들을 군 관계자라고 표현한 것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조정신청 이후 즉시 사진을 교체했으므로 손해배상청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리 결과, 중재부는 신청인들이 이미 확산된 조정대상기사를 삭제하는 데 지출한 비용을 고려해 피신청인이 손해배상 100만 원 지급과 함께, 포털사이트 및 각종 인터넷 기반 매체에 사진이 매개된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즉시 열람 · 검색 차단을 조치하는 사항에 관한 결정을 내렸고, 이에 양 당사자가 동의해 결정은 확정됐다.

조정대상보도

시민사회 단체 회원들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열린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에서 손팻말을 들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신청인들 사진] 군 관계자가 기자회견을 보며 이동하고 있다. 이날 회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방부가 준비 중인 대체복무안은 현역 육군 복무기간 기준의 2배인 36개월, 복무영역은 교정시설로 단일화, 국방부 산하 심사기구 설치를 골자로 하고 있다.”며 인권기준에 맞는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사항

기사 열람 및 검색 차단

-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인들 초상을 촬영한 사진이 더 이상 열람 · 검색되지 않도록 한다.
- 네이버,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각 사업자 및 그밖에 이 사건 사진을 매개한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 해당 사진의 열람 · 검색을 차단할 것을 전송한다.
- 향후 각 신청인에 의해 또는 피신청인이 이 사건 사진이 정보통신망에 매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안 날로부터 3일 내에 해당 사진의 열람 · 검색을 차단하도록 가능한 조치를 취한다.

손해배상

피신청인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들에게 각 50만 원씩 금원을 지급한다.

사례 35 2019서울조정573 · 574 정정 · 손배청구

객관적인 근거 없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한 보도에 대해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하고 손해배상을 하도록 중재부가 결정한 사례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귀어한 지역주민 A씨가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고소 · 고발을 일삼아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도 A씨는 오히려 자기가 피해자라며 후안무치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권력기관의 힘을 등지고 약자에게 위해를 가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2회에 걸쳐 보도했다.

신청취지

신청인은 귀어 이후 마을 이장을 역임하면서 주민 생활수준을 향상하는 데 일조했고, 오히려 마을 주민들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많아 이에 따른 사법절차를 진행한 것인데도 신청인과 대립관계에 있는 일부 주민들만을 인터뷰하여 명예가 훼손됐다며 정정보도 및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A씨가 마을 주민들을 협박한 것이 아니라 마을 주민들이 수적 논리로 A씨를 괴롭혔다.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복수의 마을 주민을 인터뷰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도했고 신청인이 연루된 형사사건을 구체적으로 보도하지 않았기에 신청인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심리 결과, 중재부는 사법기관의 확인조차 거치지 않은 채 구체적인 사건정보를 밝히지 않으면서 고소 · 고발건수를 부풀린 것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고,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일탈한 표현을 사용했다며 정정 · 반론보도 게재 및 손해배상 300만 원 지급을 내용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했다. 이에 양 당사자가 동의해 결정은 확정됐다.

조정대상보도

보도 1

[전략] 마을 이래야 고작 주민 10여 가구가 사는 조그만 섬마을. 이웃주민 누구네가 숟가락이 몇 개이고 농사 규모가 얼마인지까지 세세히 알 수 있는 경치 좋은 조용한 마을에서 험악한 인심을 목격했다. 얘기의 발단은 몇 년 전 귀어 차 이 마을에 이사 온 A씨로부터 비롯됐다. 마을 주민들의 한결같은 얘기는 A씨가 이사 온 뒤로부터 마을 주민들은 A씨와 사소한 문제로 의견이 대립되면 사법기관에 잦은 고발을 당해 하루 한날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는 것이다.[중략]

주민들의 말만 듣기에는 무언가 영 개운찮은 느낌이 들어 실제 마을 주민들을 고발한 당사자인 A씨에게 자세한 사연을 물어본 결과 대답이 가관이었다. A씨의 답변은 오히려 자기가 피해자라고 구구절절 자기변명에 급급했다. 조그만 섬 동네에서 법리를 모르는 순진한 이웃에 대한 A씨의 행패는 후안무치의 극치를 보는 것 같아 불쾌한 느낌이 가시지 않았다.[후략]

보도 2

[전략] 마을 주민들이 농성 아닌 항의성 집회를 가진 것은 같은 마을 주민 A씨의 잇단 고소 고발 횡포 때문이다. 주민들의 주장에 따르면 몇 년 전부터 A씨가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고소 고발을 한 사건만 해도 70~80여 건. 이날 모인 마을 주민들의 표정은 항의성 집회라기보다는 힘없는 약자들의 생존을 위한 피맺힌 절규였다.[중략]

그렇다면 이들 주민들이 그토록 해를 끼친다는 A씨는 과연 누구인가. 군청을 찾은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A씨는 지역의 한 언론 매체에 근무하는 기자 신분을 가진 사람으로 주민들이 땅이나 어장 관련 이해관계가로 조금만 허점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 바로 사법기관에 고소 고발을 해와 마을 사람들의 여론을 분열시키고 있다.”는 것이다.[중략]

호가호위(狐假虎威)라는 말이 있다. 여우가 호랑이의 힘을 빌려 위세를 떨친다는 말이다. 법이라는 권력과 관의 힘을 등지고 약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A씨의 행위가 과연 지역의 선량한 관습과 법에 앞서 과연 타당한 일인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이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사항

보도내용

본지는 조정대상기사 1, 2에서 B지역 주민 A씨가 마을 사람들을 상대로 고소 · 고발한 사건만 해도 70~80여건이며, A씨가 권력과 관의 힘을 등지고 약자에게 위해를 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A씨의 고소 · 고발 건수는 10여건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또한 A씨는 자신이 한

고소 · 고발은 본인이 심각한 피해를 입은 사건 또는 주민들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 정당한 행사를 한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피신청인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 기자수첩 섹션에 통상의 방식대로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최초 48시간 동안은 첫 페이지에 나타나도록 유지하고, 그 이후에는 계속 검색되도록 한다.
- 조정대상기사의 각 본문 하단에 위 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한다.

손해배상

피신청인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금 300만 원을 지급한다.

사례 36 2019서울조정626 · 627/628 · 629 각 정정 · 손배청구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저하시킬 수 있는 허위사실을 보도한 데 대해 중재부가 직권으로 정정보도 게재 및 손해배상을 하도록 결정한 사례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들의 부상이 잦은 것은 대표팀 주치의가 흉부외과 전문의라 전문성이 부족한 데 따른 것이라며, A선수의 발가락 근육 손상을 발가락 뼈 부상으로 오진하고 B선수의 큰 부상을 단순 타박상으로 진단했으며 C선수의 부상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해 서울의 한 병원 의사에게 의무기록을 반출해 진단을 의뢰했다고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두 개의 인터넷 매체를 통해 각 보도했다.

신청취지

신청인이 A선수와 B선수의 부상에 대해 진단을 내린 사실이 없는데 오진했다고 보도하고 C선수가 두바이에서 아시안컵 연습경기 도중 무릎을 다쳐 대표팀 의무팀장이 당시 한국에 있던 신청인에게 영상기록을 보내 판독을 의뢰한 사실을 신청인의 전문성이 부족해 서울의 지인에게 진단을 의뢰했다고 허위보도가 게재됐다. 이와 함께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 메인화면에도 위 기사가 게시돼 의료인으로서 명예가 실추됐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정정보도 및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대표팀 주치의는 A선수의 부상에 대해 발가락 뼈에 부상을 입었다는 진단을 내린 적 없고, 인대손상에 따른 치료 중 MRI 촬영을 진행해 근육 파열을 발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
- B선수가 부상당했을 당시 엑스레이 판독 결과 골절이 발견되지 않아 경과에 따라 CT촬영을 진행해 골절 진단을 했다.
- C선수는 연습경기에서 무릎 부상을 입었을 때 주치의가 다른 의사에게 의무기록을 반출한 것이 아니라, 대표팀 의무팀장이 두바이 내 병원에서 촬영한 MRI 영상을 당시 한국에 있던 주치의(신청인)에게 보내 판독을 의뢰한 것이다.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일부 사실과 다른 보도내용에 대해 정정보도를 게재할 의사가 있으나 손해배상

청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심리 결과, 중재부는 신청인 또는 대한축구협회 등 관계자를 통한 진단기록에 대한 사실확인 없이 허위사실을 보도한 것은 악의적이라고 판단, 정정보도 게재와 함께 손해배상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고, 이에 양 당사자가 동의해 결정은 확정됐다.

조정대상보도

59년 만의 아시안컵 우승에 도전하는 태극전사들이 부상에 신음하고 있다.[중략]

특히 A선수는 필리핀과의 첫 경기에서 다친 발가락 뼈가 아닌 발가락 근육 손상이 15일 추가로 발견돼 최소 1주일을 더 쉬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중략]

선수들의 잦은 부상을 그저 불운이라 여길 수 없는 것은 그 원인의 하나로 대표팀 주치의의 전문성 부족이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팀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주치의가 선수의 부상을 제대로 잡아내지 못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4년 전 호주 아시안컵에서 B선수가 큰 부상을 당했는데 단순 타박상이라고 오진한 것이 대표적이다. 주치의의 전공이 축구와 큰 관련이 없는 흉부외과 전공이라 생긴 한계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아시안컵에선 이미 귀국한 C선수의 부상을 꿰뚫어보지 못했다. 당초 C선수의 부상을 우려해 예비 선수로 D를 동행시켰지만, 포지션이 다른 D의 부상으로 E선수를 긴급 호출해야 했다. C선수의 귀국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의무 기록을 자신과 친분이 있는 서울 한 병원의 의사에게 반출해 진단을 의뢰한 것은 스스로의 부족함을 자인한 것이었다.

협회 내부에서도 알지 못했던 이 사실은 C선수의 전 소속팀이 최근 선수 이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팀 한 관계자는 “C에게 몸 상태가 어떠냐고 물어보니 ‘서울에 자료를 보냈다’고 말했다. 그래서 협회에 문의하니 자신들은 모르는 일이라고 말해 놀랐다.”고 귀띔했다. 결국, 협회는 C선수 사태 이후 선수들의 몸 상태를 주치의가 협회 내부와 공유하도록 지시했다.[후략]

※ 두 개의 매체가 유사한 제목으로 동일한 내용을 보도해 한 개의 조정대상기사만을 수록함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사항

보도내용

본지는 조정대상기사에서 대한민국 성인 남자 축구대표팀 주치의가 올해 아랍에미리트 아시안컵 당시 A선수의 발가락 근육 손상을 제대로 잡아내지 못했고, C선수의 의무 기록을 서울의

한 의사에게 반출해 진단을 의뢰했으며, 2015년 호주 아시안컵에서도 B선수가 큰 부상을 당했는데 단순 타박상으로 오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주치의는 A와 B선수의 부상에 대한 오진을 한 사실이 없고, C선수의 의무기록 반출도 당시 대표팀 의무팀장이 한국에 있던 해당 주치의에게 영상을 보내 판독을 의뢰한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매체 1〉과 〈매체 2〉의 인터넷 홈페이지 스포츠〉축구 섹션에 통상의 방식대로 위 보도문(조정대상기사에 사용된 사진을 보도문 상단에 삽입함)을 게재하되, 최초 24시간 동안은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나타나도록 하고, 그 이후에는 계속 검색되도록 한다.
- 조정대상기사 본문 하단에 위 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여 계속 확인되도록 한다.

손해배상

피신청인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금 1,000만 원을 지급한다.

사례 37 2019전북조정31 · 32, 2019전북조정33 · 34, 2019전북조정35 · 36, 2019전북조정38 · 39 각 정정 · 손배청구

특정 지자체를 상대로 짧은 기간 내 수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이 담긴 비판기사를 보도한 데 대한 위법성을 인정해 중재부가 직권으로 정정보도 게재 및 손해배상을 결정한 사례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지방자치단체 A군이 군수의 측근들로 구성된 불법단체에게 청사 내 사무실을 지원하고 있고, 수백 억 원을 들여 조성한 농공단지를 이미 유효기간이 지난 협정서를 근거로 특정 업체에게 헐값에 매각한 데 '커넥션' 의혹이 있으며, '하천재해예방사업'이 목적에 벗어난 초호화 공사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요지의 내용을 한 달 동안 6회에 걸쳐 보도했다.

신청취지

신청인 A군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군 행정을 처리해오고 있는데도 허위사실을 일방적으로 보도해 군 행정의 신뢰가 무너지고 명예가 훼손됐다며 정정보도 및 총 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2019전북조정31 · 32]

- 청사 내 단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하는 합법단체이며, 3년 단위로 임대계약을 체결해 연간 사용료를 받고 있다.
- 상시 구성원 수가 100인을 넘지 않아 도나 중앙부처에 등록할 의무가 없고, 대부분 전임 군수가 위촉한 인사들인데다 지역 내 다양한 인사들로 구성돼 있으며 활동사진을 담은 사업실적보고서가 있다.

[2019전북조정33 · 34]

해당 농공단지 분양은 2010년도 체결된 협정서에 따른 것이고 협정서의 유효기간은 없어 관련법에 따라 원가 이하로 분양한 것이다.

[2019전북조정35 · 36]

- 대책위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따라 구성돼 A군과 연관성이 없고 책임도 물을 수 없다.

- A군과 D시는 해당 사안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다.

[2019전북조정38 · 39]

- 해당 사업은 '하천재해예방사업'이 아니라 주민들을 위한 친수 공간 확보 및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한 '하천 환경정비사업'으로, 2011년 상급부처로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승인, 교부결정된 사업이다.
- 고가의 대리석이 아니라 일반적인 콘크리트 벽체 외부 마감재를 사용했다.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공익적인 목적에서 진실한 내용을 보도한 것으로, 취재 당시 A군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 기사에 반영했고 균형적인 관점에서 보도했다고 항변했다.
심리 결과, 중재부는 특정 지자체를 상대로 허위사실이 담긴 비판기사를 지속적으로 보도한 것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해 각 사건별로 정정보도를 게재하고 총 1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직권으로 결정했다. 이에 피신청인이 결정에 이의를 신청해 자동으로 소송이 제기됐다.

조정대상보도

[2019전북조정31 · 32]

A군이 불법단체에 청사 지하실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예산까지 지원하고 있어 논란이다.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는 "알 수 없는 단체가 군 청사에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고, 예산까지 지원받고 있다."며 "대부분 군수 측근이라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고, 대부분 외지 사람들"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공무원 대부분은 이 단체를 알지 못하고 무슨 일을 하는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군 관계자는 "'A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2013년 창립된 단체로 'A군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 연간 6,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례가 대통령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에 따른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를 위한 조례에 부합되는 단체인지의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하지 못했다.[후략]

[2019전북조정33 · 34]

보도 1

A군이 B농공단지를 337억을 들여 조성한 후, 지난 2월 15일 80억 원을 받고 C사에 매각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 농공단지는 A군 일대 10만 2천평 규모를 국비 70억, 도비 5억, 군비 262억을 들여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조성한 후,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2월 15일 C사에 80억으로 일괄매각 했다.[중략]

조성비용은 평당 33만 원인 반면 매각 금액은 평당 9만 원이다. 현재, A군 주변의 시세는 수십만원을 호가한다는 평가를 더하면 매각에 따른 커넥션이 있다는 여론이다.

보도 2

"계약서는 법령에 따라 비공개입니다." 계약서를 볼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군청 담당의 답변이다.

군은 'B농공단지'를 3백3십7억을 들여 102,406평을 조성한 후, 2월 17일 C사에 조성원가 대비 25%인 80억에 매각해 불법 특혜논란이 있다.[중략]

앞서, 337억을 들여 조성한 농공단지를 25%에도 못미치는 80억에 분양한 것은 불법적인 특혜라는 질문에 담당은 C사와의 투자협약을 들었다. 하지만 협약은 2014년 6월 시효가 종결된 상태다.[중략]

군이 감추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몰라도 A군수가 정정당당 하다면 취재에 적극 응해 해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 사정기관은 군수의 재량권 남용과 예산남용 등 관계법령의 위법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야 한다는 주민 여론을 무겁게 받아들이기 바란다.

[2019전북조정35 · 36]

A군 오염토양업정화시설과 관련 D시의 행정 처분이 잘못되었다며 A군이 반발하면서 주민대책위가 구성되고, D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A군이 강력 대응하는 과정에서 대책위 주민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군은 D시가 지난해 오염토양 정화업 설치변경 신청을 최종 수리하자 부당하다며 국회에서 법령개정을 요구하는 기자 회견을 한 바 있고, 군민총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소송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D시장 부당행정행위 척결 A대책위'가 1월부터 이 업체 감시를 위해 감시초소를 운영, 오염토양 반 · 출입과 차량운행을 감시해오던 중, 지난달 감시활동을 마치고 귀가하던 주민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중략]

군이 D시가 적용한 토양환경보전법을 적용하지 않고 업체가 주장한 대법 판례도 외면한 채,

자의적 판단에 따라 폐기물법을 적용, D시의 권한 행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주민들이 하지 않아도 되는 대책위를 구성케 하여 규탄대회를 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급기야 업체 감시에 나선 대책위 소속 주민이 사망했지만 누구도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는 사람은 없는 현실이다.[후략]

[2019전북조정38 · 39]

보도 1

A군이 2015년부터 추진한 'A천 하천재해예방사업'이 재해 예방이 아닌 '초호화 하천공사'라는 지적과 함께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사업은 당초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비 120억 규모의 재해예방사업으로 A교에서 E교 1.2KM구간과 인도설치사업 70억을 편성, 군수가 당선된 해인 2015년 12월 발주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터미널에서 군청앞 700M구간은 석축외 공사를 하지 않았고, 터미널에서 A교 구간 500M의 공사비가 1M에 2,000만 원이 소요된 것으로 추정된다.

군 관계자는 이 사업의 목적이 "집중호우로 인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친수하천 조성"이라고 했다. 또 "주민쉼터로 활용할 계획"이라는 것.

하지만 사업 목적과는 다르게 하천 재방의 단면을 자르고 옹벽을 설치하고 대리석을 시공했다. 고수부지에 산책로를 조성할 목적으로 하천의 단면에는 발파석을 이용 석축을 쌓았다. 한마디로 친환경 하고는 거리가 멀고, 재해예방과도 배치된다.

보도 2

A군이 2015년부터 균형발전특별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천재해예방사업'이 재해예방이 아닌 초호화 하천공사라는 지적과 함께 논란이 일고 있다.

공사현장의 하천 단면은 30m, A천의 상류에 속한다. 이곳은 생활하수가 유입되는 반면 홍수로 인한 피해는 없다. 재해예방사업이 아닌 친환경하천조성사업을 해야 할 곳이다. 하지만 군은 재해예방을 한다며 1m에 2,000만 원 상당의 혈세를 500여m에 사용했다.[중략]

누군가는 책임져야 하는 문제다. 중앙 정부의 잘못인지, 지사의 잘못인지, 군수의 잘못인지, 군 의회의 직무유기인지 사정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된다. 군수와 군 의원들은 정당하다면 답변을 해야 한다. 회피 한다고 진실이 가려지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 혈세 낭비는 국가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사항

보도내용

[2019전북조정31 · 32]

본보는 조정대상기사에서 “A군이 ‘A군 지속가능 발전협의회’라는 불법단체에 청사 지하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운영예산까지 지원한다.”, “대부분 군수 측근들로 구성되어 있고 대부분 외지 사람들이다.”는 등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협의회는 지속가능발전법과 관련 조례에 근거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사무실 사용료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협의회 구성원은 대부분 전임 군수 시절 위촉된 사람들이 재위촉된 위원들이며 대부분 A지역 내 인사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업결과보고서에 사진 한 장 없다.”는 보도 또한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비영리단체 지원법상 등록의무 단체는 상시 구성원 수가 100인 이상일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협의회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019전북조정33 · 34]

본보는 조정대상기사에 1, 2에서 “A군이 B농공단지를 337억 원에 조성한 후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80억 원에 매각해 특혜 및 커넥션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기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경우 산업단지의 분양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에 따라 A군은 대기업 유치를 위해 지난 2010년 C사, A군, 도 3자 간 협정서를 체결하고 협정내용대로 부지 조성 후 C사에게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A군은 “협정서 상 유효기간이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밝히고, “농공단지에 중견기업 입주도 가능하고 환경성 검토를 진행 중이며 기반 시설은 입주 회사가 부담하므로 A군에서 추가 지출하는 비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019전북조정35 · 36]

본보는 조정대상기사에서 “A군이 토양오염정화시설 관련 법령을 잘못 해석하여 D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주민을 동원한 과잉 대응으로 주민이 사망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A군은 주민들에게 대책위를 구성하게 하거나 대책위 활동에 주민들을 동원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A군은 “환경부 예규인 「토양정화업 등록 · 관리 업무처리 지침」에 오염토양 ‘반입시설의 입지는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의 입지에 준해 검토’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 예규와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토양정화시설을 폐기물 감량화 시설로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A군은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토양정화업 시설 설치 예정지가 아닌 사무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 도지사에게 하도록 규정한 환경부 예규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019전북조정38 · 39]

본보는 조정대상기사 1, 2에서 “A군이 하천 정비 사업에 12억 원을 사용하여 재해 예방이 아닌 초호화 공사를 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2011년 국토해양부와 도로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승인, 교부 결정된 ‘하천환경정비사업’으로서 공사 방법은 도 지방하천관리위원회와 지방건설심의위원회 심의를 반영해 추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A군은 “주민들을 위한 친수 공간 확보 및 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히고, “공사비가 많이 투입된 구간은 상가, 주택 등이 밀집된 지역으로 하폭이 좁아 통수 단면을 확보하기 위해 옹벽으로 시공한 것이고 고가의 대리석이 아닌 화강석 판석으로 마감한 것이며, 하수관을 정비하여 악취 때문에 산책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 보도문을 다른 기사 게재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80일 이상 게재하되, 최초 24시간 동안(토요일과 공휴일 제외)은 섹션 첫 페이지에 나타내도록 한다. 단, 해당 정정보도문의 제목 및 본문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제목 및 본문활자크기와 같게 한다.
- 조정대상기사가 계속 열람 · 검색되는 한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바로 아래에도 위 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해 함께 보일 수 있도록 하되, 제목 및 본문 활자크기는 위 항과 같게 한다.
-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이 운영하는 페이스북, 블로그, 카페 등의 인터넷 사이트나 네이버, 다음 등의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조정대상기사를 게시하거나 전재한 경우, 조정대상기사가 계속 열람 · 검색되는 한 조정대상기사의 본문이 바로 아래에도 위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해 함께 보일 수 있도록 하되, 제목 및 본문 활자크기는 위 항과 같게 한다.

손해배상

피신청인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총 1,000만 원을 지급한다.

사례 38 2019서울조정966 · 967 정정 · 손배청구

성형수술 부작용 사례를 보도하면서 이와 무관한 병원 간판을 노출한 데 대해 다시보기 영상을 수정하고 손해배상하기로 합의한 사례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시사고발 프로그램에서 가슴필러 시술 부작용 논란을 보도하면서 4개의 성형외과 병원 간판을 모자이크 처리하여 4분할 형태의 화면으로 8초간 방송했다.

신청취지

신청인은 4개 성형외과 중 한 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가슴필러 부작용 사례와 전혀 무관한데도 위 보도에서 병원 간판 중 한글 상호는 모자이크 처리됐으나 중국어 상호가 그대로 노출돼, 가슴 필러 부작용을 일으킨 병원으로 인식돼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보도 및 5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위 보도의 A성형외과는 가슴 필러 부작용을 일으킨 성형외과가 아니다.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신청인 병원의 중국어 상호가 노출된 것은 인정하지만 가슴 필러 시술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으로 보도했고, 의료학회의 향후 대응계획을 설명하는 장면에서 신청인 병원 간판을 사용해 신청인 병원이 부작용을 일으킨 병원이라고 보도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심리 결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다시보기 영상 중 문제 장면을 삭제하고, 손해배상 200만 원을 지급하는 조정안에 양 당사자가 합의에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전략] 가슴필러 시술 후 부작용을 호소하는 여성들.

가슴에 주입한 필러가 몸속 곳곳을 돌아다니고 가슴에 염증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 증상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건데요.[중략]

여전히 가슴필러 시술을 하고 있는 병원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중략]

[신청인 병원 영상] 최근 가슴필러로 인한 논란이 계속되자 의료학회에서는 대응팀을 꾸려 이 문제를 들여다보기로 했다는데요. 부작용에 관한 사례를 모으는 것을 시작으로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한 검토를 해나갈 예정이랍니다.[후략]

조정성립 사항

기사 열람 및 검색 차단

- 조정대상보도 영상 중 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 상호가 등장하는 장면(25분경)을 삭제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정대상보도를 위 항에 따라 수정한다. 또한 위 조치 이후 즉시, 계약에 의해 조정대상보도를 매개하고 있는 포털사이트에서도 위 항에 따라 수정되도록 각 포털사에 요청한다.

손해배상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00만 원을 지급한다.

사례 39 2019대구조정32 손배청구

긍정적인 내용의 보도를 위해 제공한 사진을 부정적인 내용의 보도에 동의 없이 재사용한 데 대해 사과문을 게재하고 손해배상하기로 합의한 사례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복지재단이 각종 비리로 자성을 다짐해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폭행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하면서 지난해 재단 산하기관 직원들이 사내 행사에서 촬영한 사진을 함께 실었다.

신청취지

신청인들은 A재단 산하기관 직원들로, 위 보도에 실린 사진은 개선을 다짐하는 행사에서 찍은 단체사진으로 당시 A재단이 피신청인에게 제공한 것이나, 재단에 관한 부정적인 기사에 해당 사진이 동의 없이 재사용됐고, 더욱이 담당기자에게 초상권 침해를 항의하자 부정적인 후속기사까지 보도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며 1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보도 목적으로 A재단으로부터 해당 사진을 제공받아 공표한 적이 있고 재사용 금지에 관한 요청을 받은 바 없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심리 결과, 재사용에 관한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모자이크 처리 없이 사진을 게재한 것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데 동의하고, 상징적인 수준의 손해배상금 30만 원 지급과 함께 신문지면에 사과문 게재 및 인터넷 홈페이지 내 사진 삭제 등을 포함한 중재부 권고안에 양 당사자가 합의해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A재단 사태가 심상치 않다. 무엇보다 여론이 크게 나빠져 있어 수사결과에 따라 어떤 후폭풍이 몰아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A재단 산하 주간보호시설 사회복지사의 장애인 학대 및 은폐 사건이 지역방송 등을 통해 알려지자 장애인 관련 단체들은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B시와 북구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중략]

A재단은 2018년 임금 갈취 등 각종 비리사실이 드러나 시민단체들이 B시와 북구의 엄중한 대응과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B시와 북구는 감사결과를 아직 공개하지 않은 것은 물론 관련자 징계와 고발조치도 한 사실이 없다.

이런 와중에 또다시 내부자 고발로 관행적인 폭행사실이 알려진 탓에 재단 측은 크게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A재단은 10여 개의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펼쳐 왔으나 그동안 내부적으로 큰 문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조정성립 사항

보도내용

본보는 조정대상기사에서 재단 측이 동의하지 않은 사진을 사용해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직원들에게 본의 아닌 피해를 입힌 점에 대해 위로와 사과의 뜻을 전합니다.

보도방법

- 신문 1면에 조정대상기사에 사진 속 인물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무단으로 단체사진을 게재해 초상권을 침해한 것과 관련해 사과하는 내용의 사과문을 박스 형태로 게재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인들 관련 기사내용 및 사진이 더 이상 노출 · 검색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손해배상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위로금으로 합계 30만 원을 지급한다.

사례 40 2019서울조정1108 · 1109 반론 · 손배청구

공직자의 정당한 휴가를 '기강 해이' 사례로 보도한 데 대해 반론보도 및 손해배상과 함께 기사 열람 · 검색을 차단하기로 합의한 사례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해외 공관에서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며 A공관 관계자가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휴가를 떠나면서 공직자로서 업무를 해태하는 내용의 메시지까지 남겼다고 방송했다.

신청취지

A공관 관계자인 신청인은 북미 정상회담 개최 수주 전에 휴가를 다녀온 것은 사실이나 한국 내 공무상 일정과 집안 행사에 따라 사전 결재를 받은 것이었고 곧바로 임지에 복귀해 북미 정상회담 일정을 완수했음에도, 상급자의 폭언에 항의하기 위해 1년 전에 발송한 메시지를 마치 이번 휴가를 떠나면서 남긴 것처럼 왜곡 보도하여 공직자로서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반론보도 및 3백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기사 열람 및 검색 차단을 요청했다.

신청인이 원하는 반론보도문 요지

※ 조정성립에 따른 반론보도문도 열람 · 차단되어 수록하지 않음

조정결과

양 당사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인의 휴가 경위에 관해 반론보도를 게재하고 48시간 게재 이후에는 조정대상보도와 반론보도 모두 열람 · 검색을 차단하는 것과 함께 손해배상금 150만 원을 지급하는 데 합의해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 조정대상보도는 열람 · 검색이 차단되어 수록하지 않음

조정성립 사항

손해배상

피신청인은 조정이 성립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금 150만 원을 지급한다.

※ 조정성립에 따른 반론보도문은 48시간 게시 이후 조정대상보도와 함께 열람 · 차단되어 수록하지 않음

사례 41 2019서울조정2006 · 2007 정정 · 손배청구

사기 사건과 무관한 업체의 상호가 노출된 사진을 신청인의 항의로 교체했더라도 노출 기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도록 중재부가 직권으로 결정한 사례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외국인 체류자를 대상으로 한 비자 사기 사건을 전하면서, 중국 동포가 비자 연장 신청이 계속 지연돼 여행사 앞에서 담배를 피며 담당 행정사를 기다리고 있다는 캡션이 달린 사진을 함께 보도했다.

신청취지

신청인이 운영하는 여행사는 비자 사기 사건과 전혀 무관한데도 여행사 간판이 노출됐고, 사진 속 중국 동포라고 보도된 남성은 신청인 여행사의 옆 가게 주인으로 평소에도 같은 장소에서 담배를 자주 피는데 중국 동포라고 허위사실을 보도해 신청인이 사기 행위를 했다는 오해를 받아 영업 손실도 크다며 정정보도 및 1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위 보도의 사진에 등장하는 여행사는 비자 사기 사건과 관계없는 업체이고, 사진에 등장하는 남성은 중국 동포가 아니라 대림동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다.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위 보도 이후 신청인의 항의를 받아 사진을 교체했으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심리 결과, 중재부는 사진이 교체됐다면 정정보도의 실익은 없으나 신청인이 문제를 제기한 이후에도 10일 이상 문제의 사진이 게시돼 있었다면 손해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 손해배상 30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고, 이에 양 당사자가 동의해 결정이 확정됐다.

조정대상보도

[사진캡션] 서울 대림동의 한 골목에서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담배를 피고 있는 중국 동포. 그는 비자 연장 신청이 계속 지연되자 담당 행정사를 얼굴이라도 보려고 수시로 이곳에 와 기다린다.[중략]

30일 서울 대림동 등에 거주하는 외국인 체류자들에 따르면 최근 절박한 상황에 놓인 외국인 체류자들을 상대로 한 '비자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곤경에 처한 외국인 체류자들에게 '비자를 받게 해준다.'거나 '체류기간을 연장해주겠다.'며 접근, 돈을 뜯어 가는 것이다. 비자 연장 업무 등은 비교적 간단한 일에 속하지만, 외국인 체류자들에겐 쉽지 않다. 한국어가 서툴고 정보가 부족해서다. 일부 비양심 행정사들이 이 틈을 비집고 들어가는 것이다.[중략]

이러다 보니 행정사 '사칭' 사기도 일어난다. 외국인 체류자가 많은 영등포구나 구로구 일대에 가짜 사무실을 차려놓고 돈만 받고 잠적한다. 취업비자를 받고 한국에 들어온 중국동포 왕모(36)씨는 최근 사칭 업소에 잘못 걸려들었다가 돈만 날렸다. 비자 만료로 불법체류자가 된 왕씨는 "혹시 경찰에 추방당할까 신고도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후략]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사항

손해배상

피신청인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금 300만 원을 지급한다.

사례 42 2019대전조정85 손배청구

부정확한 사실을 바탕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데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중재부가 직권으로 손해배상을 결정한 사례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지역 주택조합장이 취임하자마자 남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 동의 없이 '공사 도급계약'을 변경했으며 시로부터 시정명령을 받는 등 조합을 방만하고 부실하게 운영했다면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꼴', '부부사기단' 등으로 보도했다.

신청취지

신청인은 조합장으로 취임한 이후 시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데 당사자에 대한 사실 확인 없이 모욕적인 표현으로 허위사실이 보도돼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며 1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조정결과

손해배상청구에 관해 양 당사자 간 의견 차가 커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충분한 사실 확인 없이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데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중재부가 직권으로 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결정했고, 이에 양 당사자가 동의해 결정은 확정됐다.

조정대상보도

"여우를 피하니 호랑이를 만난다더니 고양이에 생선을 맡긴 꼴이다."

A시 B주택조합(이하 조합) 조합원들이 조합장에 대한 비아냥으로 얼핏 최근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 가족사기단을 떠올리게 한다.

애초 조합은 "청약통장 필요 없이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으며 사업승인 이후 즉시 전매가 가능하며 특히 일반분양분 공급가액을 높여 수요자들의 시세차익을 실현한다."며 분양에 열을 올렸다.

그런데 준공예정일을 앞두고 조합원 동의 없이 '공사 도급계약'을 변경한 것을 비롯해 시로부터 2회에 걸쳐 시정명령을 받는 등 조합장의 방만하고 부실한 운영이 드러났다.

이에 지난해 7월 전체 조합원 362명 가운데 274명이 참석한 임시총회를 통해 조합장을 비롯 이사 3명, 감사 1명 등의 새로운 임원진을 선출했다.

그런데 C조합장이 취임 다음 달부터 남편에 월 1,500만 원씩 지불하는 용역계약서를 작성해 '부부간셀프용역'이란 부적정 용역계약의 중심인물로 제기됐다.[후략]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사항

손해배상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

사례 43 2019제주조정12 · 13/14 · 15 각 정정 · 손배청구

사적 분쟁사안에 대해 허위사실이 포함된 일방의 입장만을 듣고 편파 보도한 데 대해 기사 열람 및 검색을 차단하고 정정보도 게재 및 손해배상할 것을 중재부가 직권으로 결정한 사례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세입자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생활오수를 10년 간 무단으로 방류한 현장을 건물 소유자가 발견하여 시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이에 시청이 세입자에게 배수시설 개선명령을 내렸다는 2개의 기사를 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각 보도했다.

신청취지

신청인과 임대차 관련 분쟁 중인 건물주만을 인터뷰해 카페의 리모델링으로 인해 생활오수가 무단 방류된 것처럼 오인하게 하고, 시청의 행정착오로 인해 개선명령 공문이 세입자에게 발송됐으나 정정 공문이 건물주에게 다시 발송됐음에도 건물주에게 책임이 없는 것처럼 허위사실이 보도돼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며 정정보도 및 2백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기사의 열람 및 검색 차단을 요청했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세입자는 건물 내 오 · 폐수관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고 무단 방류를 위한 시공을 한 사실이 없다.
- 건물 시설에 관한 책임은 건물주에게 있다.

조정결과

피신청인은 건물주만을 취재해 보도한 잘못은 인정했으나 시청 공무원을 취재할 당시 공문이 정정됐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심리 결과, 중재부는 건물주와 세입자 간 사적 분쟁에 관한 사안을 편파적으로 보도해 신청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갖게 했다고 판단, 조정대상기사의 열람 · 검색을 차단하고 정정보도 게재 및 손해배상청구액 2백만 원을 지급할 것을 직권으로 결정했다. 이에 양 당사자가 동의해 결정은 확정됐다.

조정대상보도

※ 조정대상보도는 열람 · 검색이 차단되어 수록하지 않음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사항

보도내용

본보는 조정대상기사에서 건물주와 시청 담당공무원의 의견만을 근거로 “A시 B동에 소재한 카페가 생활오수를 10년간 무단방류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돼, A시가 카페 운영자인 세입자에게 배수시설 개선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건물 내 생활오수 방류에 관한 A시의 개선명령은 세입자인 카페 운영자가 아니라 건물주에게 내려진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보도방법

-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신문 사회면에 위 보도문을 2단에 걸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 및 본문 활자는 조정대상기사 제목 및 본문활자크기와 같게 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면에 48시간 동안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최초 48시간 동안은 주요뉴스목록 상위 3번째 이내에 나타내게 한다. 제목은 조정대상기사의 제목활자 크기와 같게 하여 [ ] 안에 표시하고, 제목을 클릭하면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 크기와 같은 크기로 작성된 위 보도문이 나오게 한다. 48시간 게재 완료 이후에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계속 확인할 수 있게 한다.
- 조정대상기사의 열람 및 노출을 차단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더 이상 열람 · 검색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네이버〉와 〈다음〉 등 피신청인이 계약에 의해 기사를 공급하고 있는 각 사업자에게도 위 사항을 전송한다.

손해배상

피신청인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금 200만 원을 지급한다.

사례 44 2019충북조정44 · 45 정정 · 손배청구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지자체 행정을 비판한 보도에 대해 기사 오류를 인정, 열람 · 검색 차단 및 손해배상하기로 합의한 사례

보도내용

피신청인은 A군이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관리 업무를 방치해 순대제조식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됐고, 군의회에 병원 매입을 위한 예산 승인을 요청했다가 거부당했으며, 관광객을 돈으로 유치한다는 의혹 등에 관해 4차례에 걸쳐 보도했다.

신청취지

A군은 관내에 HACCP을 적용받는 순대 제조 · 가공업자는 없고 관련 업무 소관부처는 군이 아닌 식약처이고, 군의회에 부지 매입을 위한 예산 승인을 요청한 사실이 없으며 관광객 유치에 관한 근거 없는 의혹기사로 군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졌다며 정정보도 및 1,2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신청인이 원하는 정정보도문 요지

- 순대 제조는 2017년부터 HACCP 인증 없이 판매할 수 없는데 A군이 행정을 방치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A군이 B병원 매입을 위해 부지매입비 12억여 원을 군의회에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A군이 돈으로 관광객을 사온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A군 관광사업을 담당하는 A군관광협의회에 근무하는 4인은 모두 외부인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정결과

피신청인이 정정보도 또는 기사 열람 · 검색을 차단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고, 신청인은 정정보도보다 기사 열람 · 검색 차단을 원하며 상징적인 수준이라도 손해배상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혀, 조정대상기사의 열람 · 검색 차단 및 40만 원을 손해배상 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 조정대상보도는 열람 · 검색이 차단되어 수록하지 않음

조정성립 사항

기사 열람 및 검색 차단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들 및 관련 블로그 게시물들을 전부 열람 또는 검색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손해배상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40만 원을 지급한다.